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사항 유예기간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자원과-849(2019.02.11.)호 및 사회서비스자원과-3404(2019.6.17.)호

2.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개정 후 사회복지현장의 운영상황 등을 확인한 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주체 및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개정사항 적용에 다소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당초 지침에서 안내 했던 유예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시설 소관 지자체에 붙임과 같이 공문 시행('19.6.17.)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선 대책 내용	당초 유예기간	변경 유예기간
신고 및 사업주체 일치 등 *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3쪽, 20쪽, 32쪽	2019.12.31.	2021.06.30.*
고용계약 이원화 해소 등 *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2쪽	2020.12.31.	

* '21.7월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항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점 고려.

붙임 지자체 발송 공문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자립기반과장, 노인정책과장, 노인지원과장, 요양보험운영과장, 보육정책과장, 인구정책총괄과장, 아동복지정책과장, 아동권리과장, 아동학대대응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 자립지원과장, 질병관리본부장(결핵·에이즈관리과장), 여성가족부장관(다문화가족과장), 여성가족부장관(가족문화과장), 여성가족부장관(가족지원과장), 여성가족부장관(가족정책과장), 여성가족부장관(권익정책과장), 여성가족부장관(권익지원과장), 여성가족부장관(권익보호과장), 여성가족부장관(권익기반과장),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정다은	서기관	최호용	사회서비스자 원과장	전결 2019.6.18. 임혜성
협조자					
시행	사회서비스자원과-3428	접수	가족지원과-2393	(2019.06.18.)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비스자원과	6층 사회서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256	팩스번호	044-202-3958	/ jd5781@korea.kr	/ 대한민국 공개